

주식회사 설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원 및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1
1. 회사제도 이해하기	4
1.1. 회사와 주식회사	4
1.1.1. 회사의 개념	4
1.1.2. 주식회사의 개념	5
2. 주식회사 설립준비	9
2.1. 발기인 구성하기	9
2.1.1.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9
2.2.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11
2.2.1. 설립목적 정하기	11
2.2.2. 회사상호 정하기	14
3.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18
3.1. 발기인의 정관작성	18
3.1.1.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18
3.1.2. 정관의 공증	20
3.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1
3.2.1.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21
4.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23
4.1. 발기설립의 경우	23
4.1.1.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23
4.1.2.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25
4.2. 모집설립의 경우	28
4.2.1.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28
4.2.2. 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31
4.2.3. 설립경과조사	34
5.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37
5.1. 인허가 및 세금납부	37
5.1.1. 사업의 인허가 확인	37
5.1.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38
5.2.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40
5.2.1. 주식회사 설립등기	40
5.2.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43

1. 회사제도 이해하기

1.1. 회사와 주식회사

1.1.1. 회사의 개념

회사란?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5\)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고 주주가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29조제1항) .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및 제3항) .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상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51조제3항) .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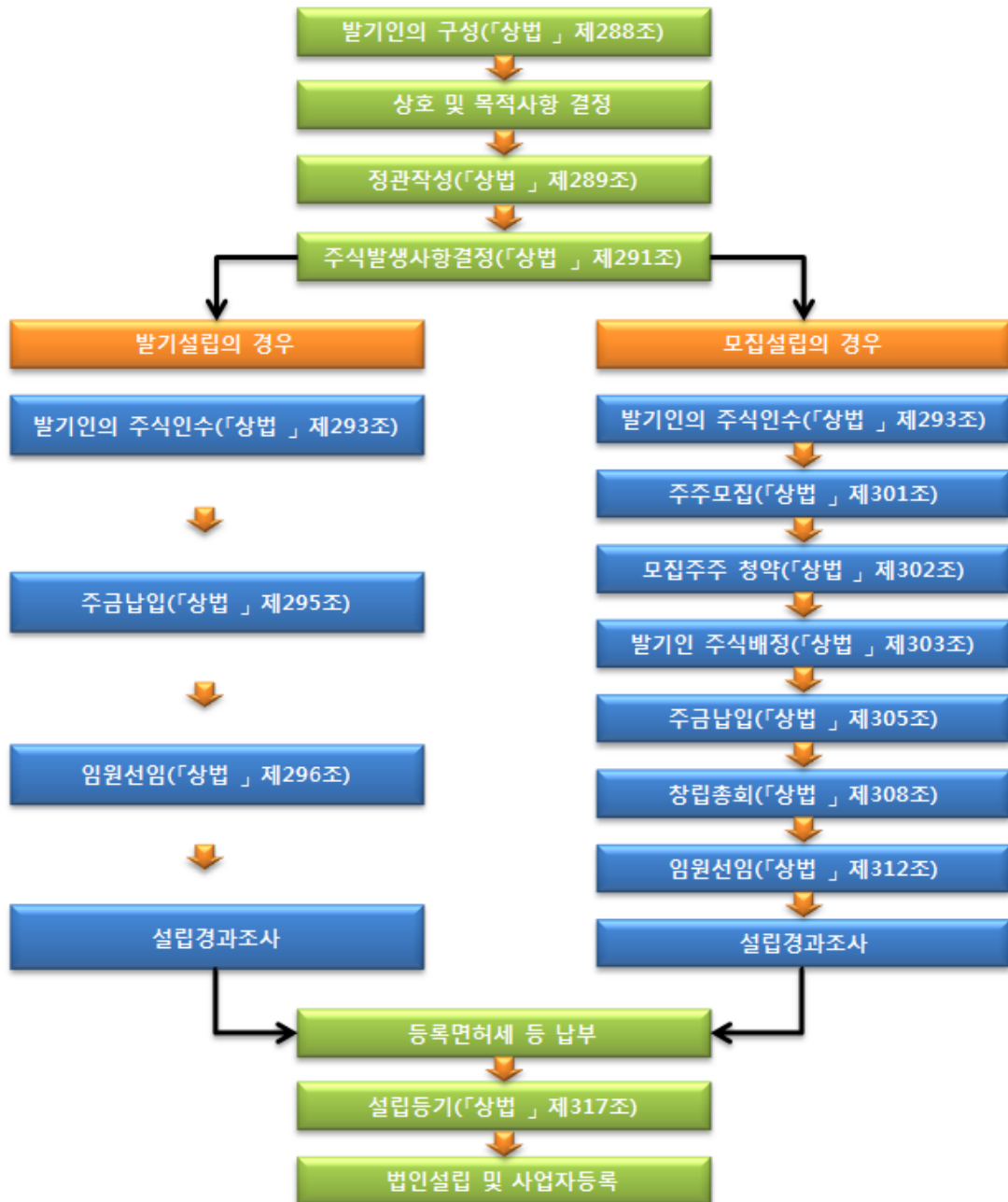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상법」 제331조 및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참조) .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에 관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잔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설립방법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주식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준비

2.1. 발기인 구성하기

2.1.1.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조 참조).

발기인의 인원수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288조 참조).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같이 설립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찾기가 힘들어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회사설립 업무를 담당하므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인수금의 납입 → 회사기관의 구성 → 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과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발기인 조합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참조).

다만, 「상법」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및 제291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21조제1항).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1조제2항).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9조, 제315조 및 제321조제3항).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1항, 제324조 및 제400조).

√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9조, 제324조,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2항).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26조제1항).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상법」 제326조제2항).

※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327조).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27조).

발기인에 대한 처벌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7조).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발기인이 이사, 감사, 검사인, 감정인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사항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2.2.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2.2.1.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목적의 필요성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상법」 제385조, 제399조 및 제402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려면?

Q.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정관에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조업이라고 쓰면 되나요?

A.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목적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에서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 띄어쓰기 해야 할 검색어를 붙여쓰기할 경우, 붙여써야 할 검색어를 띄어쓰기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분류코드 검색 시 일치하는 코드만 검색됩니다.

차수 11

구분 전체

조건 포함검색

검색어

Q

한국표준산업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광업(05~08)

C.제조업(10~34)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봉제의복 제조업

1411.겉옷 제조업

1412.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한복 제조업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모피제품 제조업

143.편제의복 제조업

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분류내용보기

차수	11	분류코드	14
분류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설명			
색인어			
출력 목록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임원, 주주, 회사 거래처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봉제의복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참조>

설립목적이 불법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법원의 회사해산명령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

회사해산명령절차의 관할

회사해산명령절차는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신청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해산명령을 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

※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9. 12. 자, 95마686 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면 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161조).

2.2.2. 회사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상호 정하기

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판례] ‘부정한 목적’의 의미

– 「상법」 제2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营业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자).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해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경쟁치킨 회사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사한 영업표지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합·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상호등기

상호등기 방법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Q. 주식회사 상호를 정해서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 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의 개념

주식회사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여 두는 등기를 상호가등기(商號假登記)라고 합니다.

상호가등기의 신청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38조제1항).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2항).

상호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목적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정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상호가등기의 효력

가등기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및 제45조).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및 별표 1).

구분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개월(6개월 미만의 기간은 6개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공탁금액		

3.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3.1. 발기인의 정관작성

3.1.1.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 (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 ③ KRX 한국거래소 (www.krx.co.kr) 홈페이지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 장소에 대해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 본점소재지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취소의 소 및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와 같은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상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6조).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공고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이 있습니다(「상법」 제290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감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 변태설립사항의 감사인의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발기설립의 경우-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제1항 단서),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제3항 단서) 등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1.2. 정관의 공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관의 효력발생 (공증)

정관의 공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 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수 수 료
5천만원 이하	8만원
5천만원 초과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3.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2.1.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이란?

“주식발행사항”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② 1주의 금액)

외에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주식의 표준이 되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②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제344조, 제345조제1항 및 제346조제1항).

주식의 종류	내용
의결권제한주식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4조의3제1항 참조).
전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상법」 제346조제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47조).
상환주식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5조).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그 수와 금액의 결정

「상법」에서는 회사설립 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자본총실의 이념상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몇 주(株)를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및 제330조).

무액면주식 발행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3호).

주식발행사항에 관한 발기인의 동의

발기인 전원의 동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

회사설립 등기시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발기인 전원의 동의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설립 등기시 그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4호 참고).

4.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4.1. 발기설립의 경우

4.1.1.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주식인수증 작성 예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작성 예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설립시스템 매뉴얼](#)」 참조).

1. 상호에는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는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예〕 우선주: 1,000주]
3. 1주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인수주식 총액은 위 2. 및 3.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납입기관 및 장소는 주식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납입장소를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발행됨과 동시에 발기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증에 기재된 납입기관이 기준이 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되는 납입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6.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실시합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예>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조회

1. 상호 : 주식회사 200407업무테스트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주

3. 위 총액 : 금 1,000원

4. 1주의 금액 : 금 100원

5. 납입기관 : 중소기업은행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20년 04월 07일

주식회사 200407업무테스트 발기인 대표 귀하

수정 목록 닫기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출자이행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1항 전단).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4.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발기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1항 후단).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및 「상법」 제318조제1항).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이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18조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납입가장죄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 및 발기인의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가장납입(假裝納入)의 효력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식인수금 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식인수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4.1.2.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임원의 선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발기인의 인수가액에 대한 전액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296조제1항).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합니다(「상법」 제296조제2항).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등기시에 등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전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 및 제389조제1항).

또한 대표이사를 정할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2항).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의 선임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본문).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감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및 제299조의2 전단).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및 제299조의2 후단).

검사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제1항).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제3항).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9조제4항).

※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위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99조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증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증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 √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증가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1항).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과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제3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법원의 통고가 있는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00조제3항).

※ 이 경우 법원의 처분으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변경처분 재판의 등본은 회사설립 등기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변경된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7호 참조).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제1호).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이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4.2. 모집설립의 경우

4.2.1.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이 경우 발기인은 주식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수하면 됩니다.

※ 주식인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주주를 모집할 때 주식청약서에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하므로 주주를 모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제4호 참조).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 청약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01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1항).

※ 주식인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3호).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 주식인수 청약을 할 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청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상법」 제302조제3항).

가설인 또는 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1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2항).

청약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주식 총수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발기인이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성립하게 되며, 주식인수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03조).

출자이행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 4. 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주식인수금 납입기관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정해 이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제9호 및 제305조제2항).

인수가액을 납입할 때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 관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0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및 제82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및 「상법」 제318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18조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및 305조제3항).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7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러한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7조제2항 및 제3항).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납입가장죄(納入假裝罪)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 및 발기인 등의 납입가장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가장납입의 효력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가장납입한 주주의 지위

판례는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판례] 가장납입 주주의 지위

-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4.2.2. 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창립총회의 소집

창립총회란?

“창립총회”란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설립절차의 최종단계로서 개최되는 주식인수인(발기인도 주식을 인수하므로 이에 포함됨)의 총회를 말합니다. 이사·감사의 선임 이외에 정관변경결의, 설립폐지결의, 반대설립사항 가운데 부당한 것을 변경하는 처분 또는 설립절차의 조사보고를 받는 권한 등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1항).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면 창립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식인수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3조제1항 본문).

※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 창립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창립총회일과 소집장소, 시간, 총회에서 논의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 창립총회에서 회의할 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도록 하지만, 정관변경 또는 회사설립폐지 결의와 같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창립총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16조).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방법

창립총에서의 의결권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갖는 의결결원 1주마다 1개로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9조제1항).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주식인수인이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1항).

주식인수인이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2항).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갑(甲)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갑(甲)은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창립총회에서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나요?

A.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갑(甲)이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267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갑(甲)의 의결권 일부는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총회일 3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68조의2제1항 및 제369조제1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

창립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인수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3항).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방법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9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창립총회 결의 외에도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3조).

※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창립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 의사록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의사록 2통을 공증인에게 제출하며, 그 인증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제66조의2제5항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2항).

창립총회 의사록은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9호).

창립총회의 기능

창립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창립총회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지만,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창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①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②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11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12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9조제1항 본문).
설립경과에 관한 조사·보고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상법」 제310조제2항)와 설립경과 전반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상법」 제313조제1항) 등을 받습니다.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6조).

창립총회결의의 하자

창립총회 결의취소 소송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6조제1항).

소제기 사실의 공고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76조제2항, 제186조 및 제187조).

발기인 등이 이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2호).

결의취소판결의 효력

창립총회 결의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식인수인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결의취소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190조, 제376조제2항 및 제308조제2항).

4.2.3. 설립경과조사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제3항 및 제313조제2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부실한 조사·보고에 대한 제재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3조).

이사·감사 및 공증인이 조사한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보고

감사인의 선임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감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감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감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및 제310조제3항).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후단 및 제310조제3항).

감사인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조사한 감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2항).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창립총회의 변경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기인에 대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4조제1항 및 제315조).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및 제314조제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는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00조제3항 및 제314조제2항).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창립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제1호).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이 경우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사, 감사, 감사인 또는 공증인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5.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5.1. 인허가 및 세금납부

5.1.1. 사업의 인허가 확인

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인허가 여부 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들어간 다음 인허가 서류 조회를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경우>

업종코드목록조회

※ 업종코드 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하거나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 귀속연도 2025
 업종코드
 업종 **화장품**

업종코드목록
(해당 업종을 두번 눌러 선택하세요)

조회조건 10 건

선택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	선택
☐	2025	242401	제조업	세제, 화장품 ...	치약, 비누 및 기타 ...	•세탁비누	선택
☐	2025	242402	제조업	세제, 화장품 ...	치약, 비누 및 기타 ...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	선택
☐	2025	242403	제조업	세제, 화장품 ...	화장품 제조업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	선택
☐	2025	242404	제조업	세제, 화장품 ...	계면활성제 제조업	•섬유, 종이, 필름, 화장품 ...	선택
☐	2025	242405	제조업	세제, 화장품 ...	표면 광택제 및 실...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	선택

예시와 같이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인허가사업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조회

• 인허가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등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예시
 ☒ 업종 키워드
 ☐ 업종코드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목록

업종코드	적용업종명	구분	근거법령	제출서류	접수기관	민원사무명	비고
242403	화장품제조	등록	화장품법 제3조(...	등록필증	식품의약품...	화장품제조...	화장...

인허가사업인 경우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접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1.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세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록면허세의 납부

주식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종과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교육세의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 [이텍스 (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 (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2.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5.2.1. 주식회사 설립등기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시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제1항).

구분		등기신청 기간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2항)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절차>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 첨부서면 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서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5-1호(발기설립) 및 양식 제65-2호(모집설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의 등기

회사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및 제317조제4항).

5.2.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개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제출서류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관(외국법인만 해당) 1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찾기 쉬운 생활법령

1부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법인만 해당)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신탁 계약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